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1나932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1나93281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10. 7 선고 2020가단56131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

담당변호사 오동한

변론종결 2022. 9. 15.

판결선고 2022. 10. 13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10. 7. 선고 2020가단56131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화성시 C 대 198.7㎡에 관하여 2017. 12. 8. 체결된 수분양권 증여계약을 163,508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63,508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(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피고 본인 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2.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).

B의 재산상태나 B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

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